

2023 경상북도 중대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

주요내용

- 경상북도 산업재해 현황
- 경상북도 산업안전보건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경영방침
- 중대산업재해 대응 추진체계 확립
- 중대산업재해 예방 세부 추진계획
- 중대산업재해 경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사항
- 경상북도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목 차

I. 추진배경 및 경과	3
① 추진배경	3
② 추진경과	4
II. 추진목표	5
※ 경상북도안전·보건경영방침	6
III. 경상북도 중대산업재해 대응 추진체계	7
① 의무주체 및 보호대상	8
② 소관부서 및 업무범위 정의	8
IV. 세부 추진계획	9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9
② 산업재해 예방 의무사항 이행	11
③ 산업재해 관리상황 모니터링 강화	19
V. 행정사항	22
① 향후계획	22
② 산업안전보건관리 관련 자료(붙임)	23

2023 경상북도 중대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

도정 전반에서 활동하는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구현하고자 함

I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대규모 인적재난 발생에 따라 사회적 관심은 현저히 높아졌으나, 일반인들의 안전 불감증 등 재난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변하지 않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공공행정(도정)의 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 과거 사고발생시 현장책임자 처벌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로 강화
- 최근 道종사자 산재 현황(치료 6개월 이상) : 총7건(사망1, 재해6)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수	1		1		1		3	1		
원 인	화상		탈골		낙상		낙상 등	과로		

- 최근 도내 산재 사고사망 발생현황 : 총17명(수행1명, 발주16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9월)	
	수행	발주	수행	발주	수행	발주	수행	발주	수행	발주
재해자수	0	3	0	6	0	2	1	4	0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입법취지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여 재해로부터 모든 종사자 보호
- 중대산업재해란 : 근로자가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작업과 업무로 인하여 다음 하나의 ‘중대재해’ 결과를 야기
 -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 구성요건 : ①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② 중대재해 야기
- 벌칙규정(경영책임자와 법인의 양벌 처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① 사망: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 ② 부상·질병: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 인

- ①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 ② 부상·질병 : 10억원 이하 벌금

2 | 추진경과

- 「道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제정('21.12월)
- 중대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22. 3월)
- 중대재해예방 추진상황 보고회('22. 4월)
- 안전보건 소통게시판 운영(내부 행정망)('22. 5월)
 -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직원 의견 수렴
- 상반기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의무이행 점검('22. 6월)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22. 7월)
 - 전담조직*(중대산업재해예방팀) 및 전담인력(산업재해 3명, 시민재해 1명) 구성
- 중대산업재해 담당자 교육('22.10월)
-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배부(400부)('22.10월)
- 하반기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의무이행 점검('22.11월)
- 하반기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23. 2월)
 -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분리 추진(안전정책과-2451)

*중대산업재해 전담조직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상시근로자 500명이상 강행규정)
- **구성 및 조직** : 경제정책노동과 중대산업재해예방팀(3명)
- **주요기능**
 -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총괄 업무
 - 중대산업재해 종합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
 -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개선(반기별)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 및 재발방지 등 관련사항 조치
 -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 및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이행 사항 점검(반기별)

비전 안전문화 정착! 안전일터 구축! 새로운 경상북도!

목표 통합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중대산업재해 **Zero**✓ 달성

추진전략

주요과제

안 전 보 건
관 리 체 계 구 축

- ▶ 경상북도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 종사자 의견 참여를 통한 안전보건 강화
- ▶ 道 안전보건 관리규정 운영 및 준수

안 전 보 건 확 보
의 무 이 행

- ▶ 사업장별 산업재해예방 계획수립 및 이행
-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권한부여 및 평가 시스템 구축
- ▶ 안전보건관리의 충분한 예산편성 및 집행
- ▶ 비상대응 계획 수립 및 매뉴얼 제작
- ▶ 도급·용역·위탁시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산 업 재 해 예 방
실 천

- ▶ 산업재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 의무이행사항 점검, 보고 등 관리체계 정착
- ▶ 道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교육 강화

경상북도 안전·보건경영방침

경상북도는 공공행정 활동 전반에 전 직원들과 관련 종사자, 이용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모든 구성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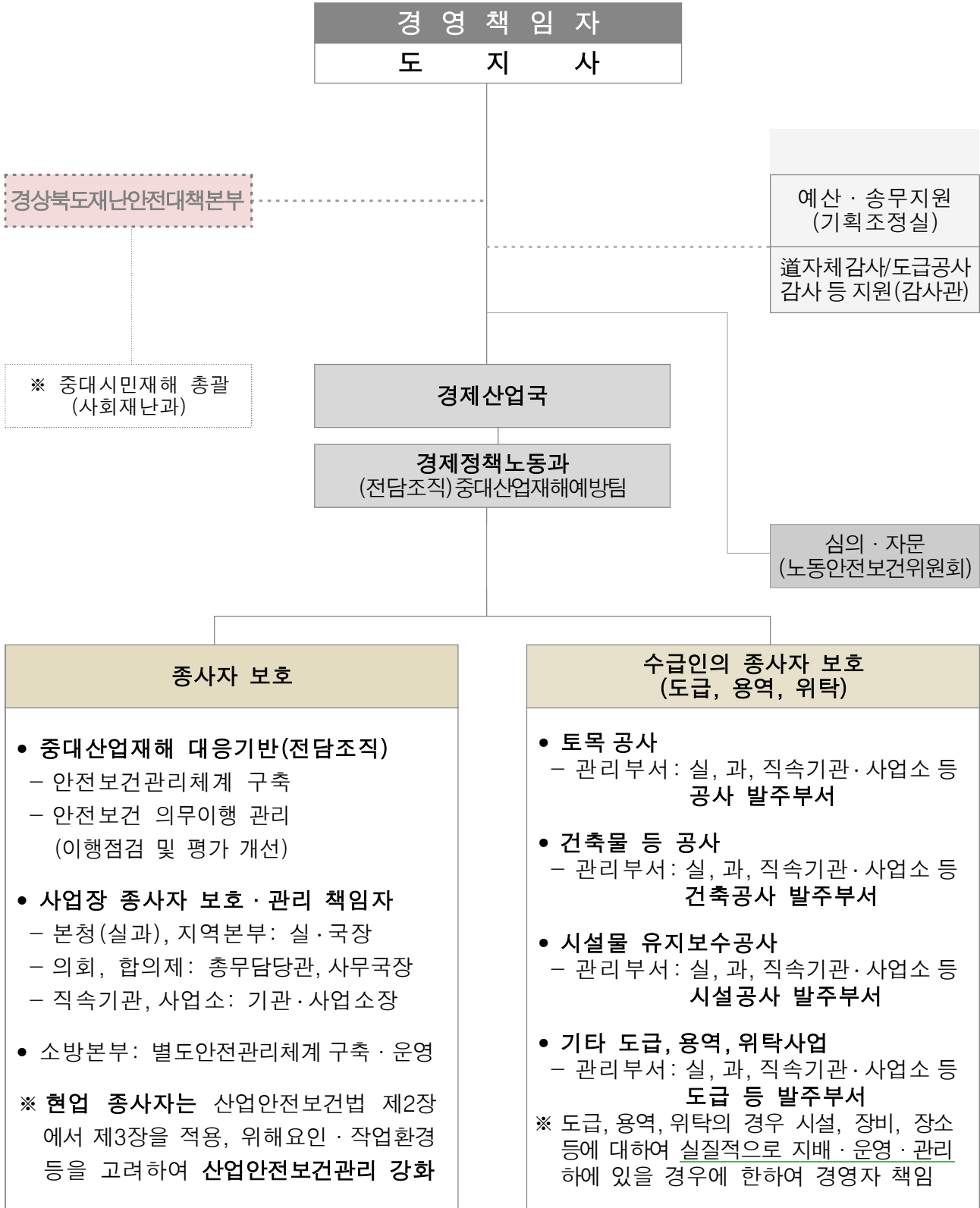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지속적인 안전보건환경을 구축한다.

1. 도지사는 직원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기관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도지사는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이행·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도지사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대체·통제하기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4. 직원의 참여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공유한다.
5. 도지사 및 모든 종사자는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 상대방(수급인)과 그 종사자에게 우리도의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안전보건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도지사 및 모든 종사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전반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한다.

2023년 3월. 경상북도지사

Ⅲ

경상북도 중대산업재해 대응 추진체계



1 | 의무주체 및 보호대상

- 의무주체(경영책임자) : 경상북도지사
- 보호대상 : 공공영역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
 - 공공행정 종사자 :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3,182명(붙임1)
 - ※ 소방직(5,703명)은 자체안전보건계획 수립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등 개별법 준수(반기 1회 이행여부 확인)
 - 도급(*건설공사 제외), 용역, 위탁 등 제3자의 종사자

*** 경영책임 제외 건설공사(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108쪽)**

-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 제11호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 *건설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사 또는 시설·장비·장소 등에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경우 건설 시행사 책임. 그러나 이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경영책임자 처벌 ▶ 사내 건설공사의 경우와 같이 수급인의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사내)에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실질적 지배·운영·관리가 있다고 판단

2 | 소관부서 및 업무범위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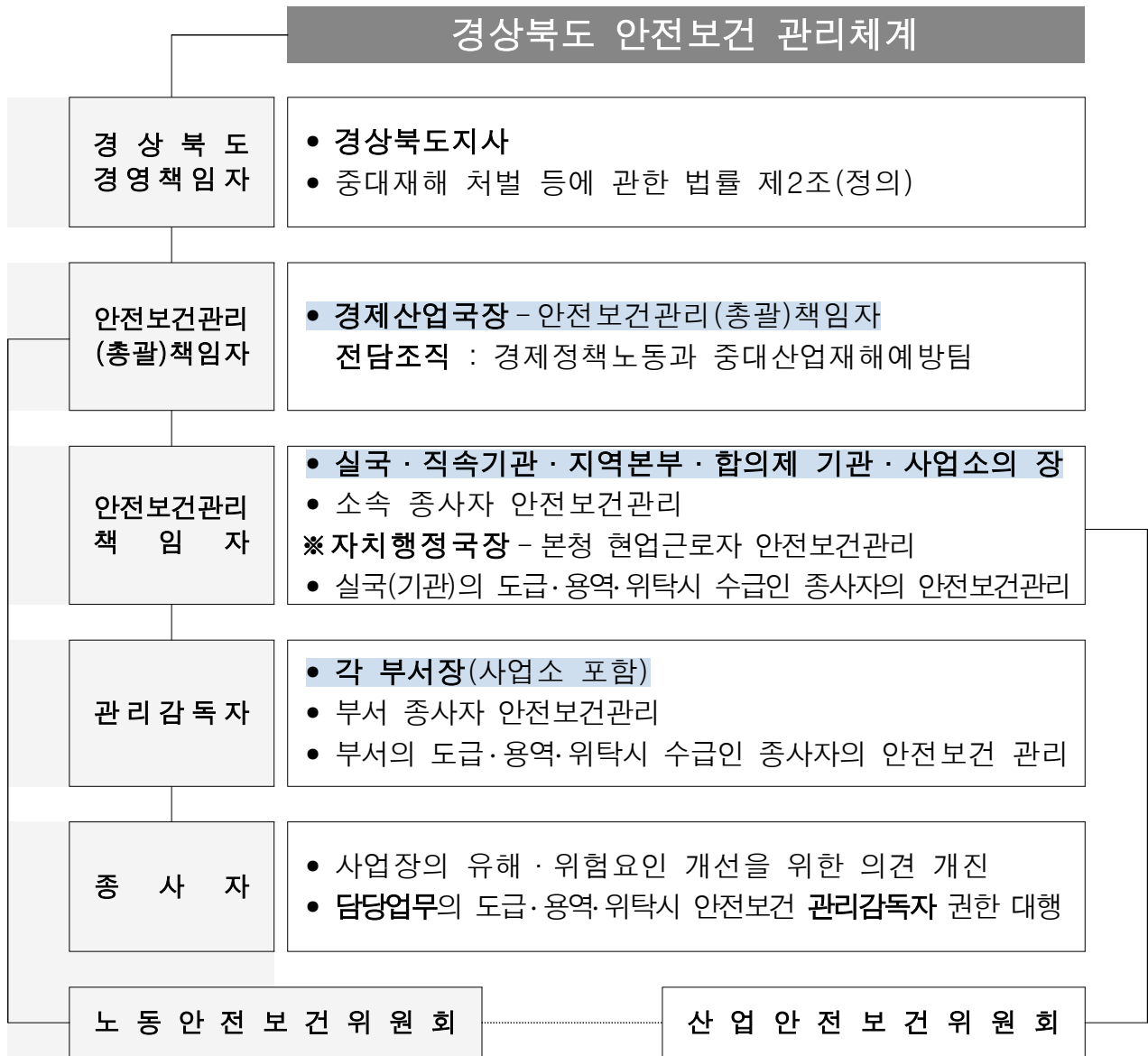
구분		경영책임자	관리부서	
중대 산업 재해	총괄관리		경제정책노동과	
	공공영역	도(道)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등 종사자	도 지 사	실·국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등
		도(道) 사업(도급·용역·위탁)	도 지 사	발주부서(실·국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등)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기관의 장	예산담당관
민간영역	사업주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IV

세부 추진계획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1-1 경상북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산업안전보건관리란?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제2조등)

※ 관리범위 : 본청, 의회, 사업소, 직속기관, 합의제, 출장소 등

- 본청 현업근로자 보호(전문기관 위탁)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붙임2)

- 관리감독자: 127명(본청 66, 의회 9, 지역본부 13, 직속 19, 사업소 17, 출장소 1, 합의제 2)

①-2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마련(재해 사전예방)

1. (공무원)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조합 의견 청취

- 방법 : 사업장별 의견수렴 간담회, 대의원 간담회 등 ▶ 회의록 작성
- 내용 : 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청취 및 개선 조치
- ※ 「2023년 단체협약」개정 시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 (현업근로자)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붙임3)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9조
- 구성(본청) : 12명(사용자 위원 6, 근로자위원 6)
- 운영(본청) :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수시) ※ 회의록 작성 확행
- '22년 운영실적 : 4회(3.31, 6.23, 9.23, 12.23)
- 내용 :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 환경개선 등 산업안전보건에관한 의견개진, 중요사항 심의·의결
- ※ 대상 사업장 : 본청, 농업기술원(2023년부터 운영 필요)

3. 안전보건 소통 및 정보공유 활성화

- (온라인) 도 게시판 운영
- 직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유해·위험요소 신고 및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개진,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공유
- 도급·위탁·용역 등 제3의 종사자 참여 활성화
- 사업장별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붙임4)

4. 취합보고: 제안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반영여부 검토, 반기 1회 결과제출

- ① 사고보고(작업자 → 관리자 → 실국장, 직속기관·사업소장 등)
- ② 원인분석(작업자 및 관리자 → 실국장, 직속기관·사업소장 등)
- ③ 재발방지 대책마련 및 시행(작업자, 관리자,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참여)
- ④ 방지대책 및 결과보고(부서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 전담부서)
- ⑤ 현장점검 및 지도(전담부서 → 부서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2 | 산업재해 예방 의무사항 이행

②-1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장별 산업재해예방 계획(붙임5)을 매년 수립하고 반기별 이행실태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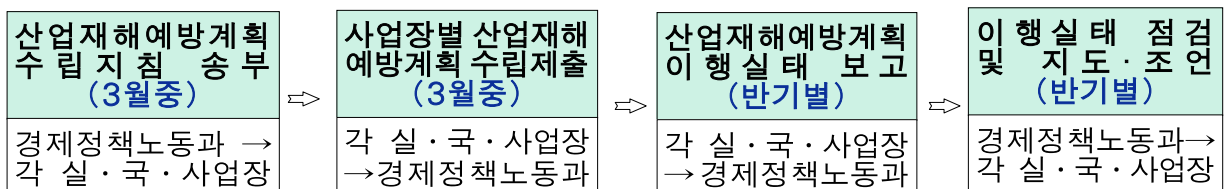
□ 수립개요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수립시기 : 매년 수립·제출(→ 경제정책노동과)
- 수립대상 : 전 사업장(실·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등)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주요내용

- ①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목표 수립
- ②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성
 - 관리자 지정, 안전보건 예산편성(시설·장비의 교체 및 유지관리, 점검, 교육 등)
-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교육대상별)
- ④ 위험요인 확인, 제거·대체·통제, 개선 계획(안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등)
 -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방호조치, 안전검사, 보호구 등)
 -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물질안전보건자료 활용)
- ⑤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발주공사 K2B(안전보건관리 관리시스템) 관리 운영 등
- ⑥ 근로자의 보건관리(작업환경 측정, 건강관리, 주기적인 업무량 확인 등)
- ⑦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 자체계획 및 매뉴얼 구비

□ 수립 및 이행절차



2-2-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위험성 평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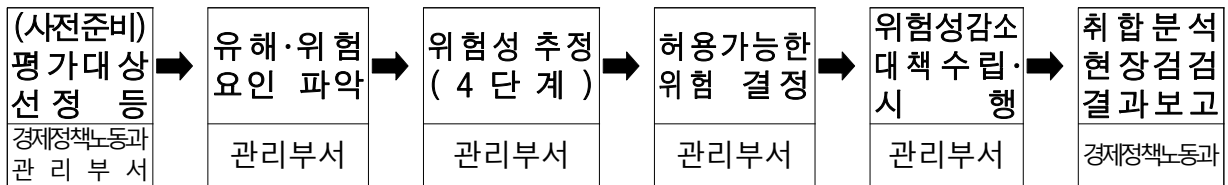
사업장*별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제거·대체·통제)하는 등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시행

□ 개요

- 평가종류 : 최초평가, 수시평가(작업환경 변경 등), 정기평가(반기별)
- 수행주체 : 도지사(부서장)(부서별 관리감독자, 종사자 참여)
 - (현업부서 관리감독자) 현업종사자가 근무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개선
 - (부서 관리감독자) 부서 및 관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개선

*사업장은 종사자가 근무하는 부서 뿐만아니라, 도급·용역·위탁 등의 현장 사업장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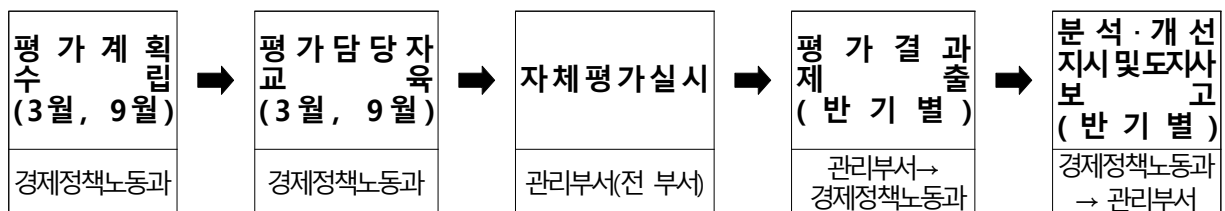
○ 평가절차



□ 추진방안

- 기간/대상 : 사업장(관리부서)별 계획수립·위험성평가 실시 후 상반기(6.10일), 하반기(12.10일)까지 경제정책노동과 제출
- 환경 개선 : 평가에서 발굴된 시설·장비 등 물적 위험요인과 업무절차(붙임6), 작업자의 행태적 요인 등 근무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
- 기계·기구·설비 현황 목록 작성, 위험요소 세부확인 및 분류

□ 추진일정



②-2-② 종사자 건강관리 및 청사보안 강화(인사과, 자치행정과, 전부서)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 건강관리 적극 지원

□ 직원 건강검진

- (건강검진비) 공무원의 건강검진 후 본인 납부 검진비용을 최대 30만원 지원하여 자부담 최소화하고 지속적 지원 확대 노력(격년제)
- (협약병원) 건강검진 협약병원 확대

□ 직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심리상담) 민원업무 등 담당자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개인심리상담, “온마음터치” 프로그램 등 운영
- (협약병원) 관내 협약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직원의 편의성 제고
※ (분야)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 감정관리, 심리검사 등

□ 업무 과중 해소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부서장은 주기적인 직원 상담 실시
- 과중업무가 해소 되도록 직원 간 업무조정

□ 현업근로자 보건관리

- (특수건강검진) 분진·소음 등 직업병 발생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현업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검진 실시
※ 검진주기는 1년 이내, 뇌심혈관 질환 발병도 평가 및 직무스트레스 검사 병행 추진 검토
- (유해요인 조사) 단순반복 작업 등으로 건강장해(근골격계 질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요인을 점검하여 개선

□ 청사 보안점검·방호 강화(화재 등 사전예방)

- 최종 퇴장자 보안확인 및 보안점검일지 작성
- 청사 관리부서(자치행정과 등)의 주기적인 방호·보안 상태 유지

②-3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보건 법령상의 의무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의 선제적 확보

□ 추진방향

- ②-1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 소요예산*을 포함한 신속한 집행과 추가 조달방안 등 집행계획 수립
 - * 사업장별 시설장비 구입, 전문인력 총원, 교육, 건강검진비용 등
- 매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확대가 필요한 분야를 새롭게 발굴하여,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등 예방적 안전조치 강화

□ 주요내용

- (사업)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 (시설) 시설 유지·보수, 장비확충, 법정 검사비 등
- (교육·홍보) 안전보건 관련 교육, 회의·행사비*, 홍보물** 제작비 등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관련 직원 간담회
 - ** 산업재해예방 홍보 팸플릿, 포스터 등
- (건강)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심리상담센터 운영 등
- (긴급 집행) 중대산재예방 긴급예산 수요 발생 시 예산 편성 및 집행

□ 향후계획

- 사업장별 안전보건 관련 예산 집행현황 점검(반기별)
- 익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 안전보건 예산편성 안내(7월)
- 유해·위험요인이 많은 관리부서 중심으로 집중편성
 - 전문기관, 현업종사자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예산 필요 분야를 발굴하고, 중기사업계획, 예산안 등 재정 투자계획 마련
- 안전·보건 관련 예산 수요 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등에게 예산편성 권한 부여 (예산담당관 협조)

②-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필요한 권한, 예산 부여 및 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평가·관리하여 안전·보건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방향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 심사권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권한 부여
 - 안전·보건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보건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
- 부서평가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관리('24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기초한 평가기준 마련 및 반영 등 ▶ 부서 평가지표 마련 및 평가(경제정책노동과, 정책기획관)

□ 관련법령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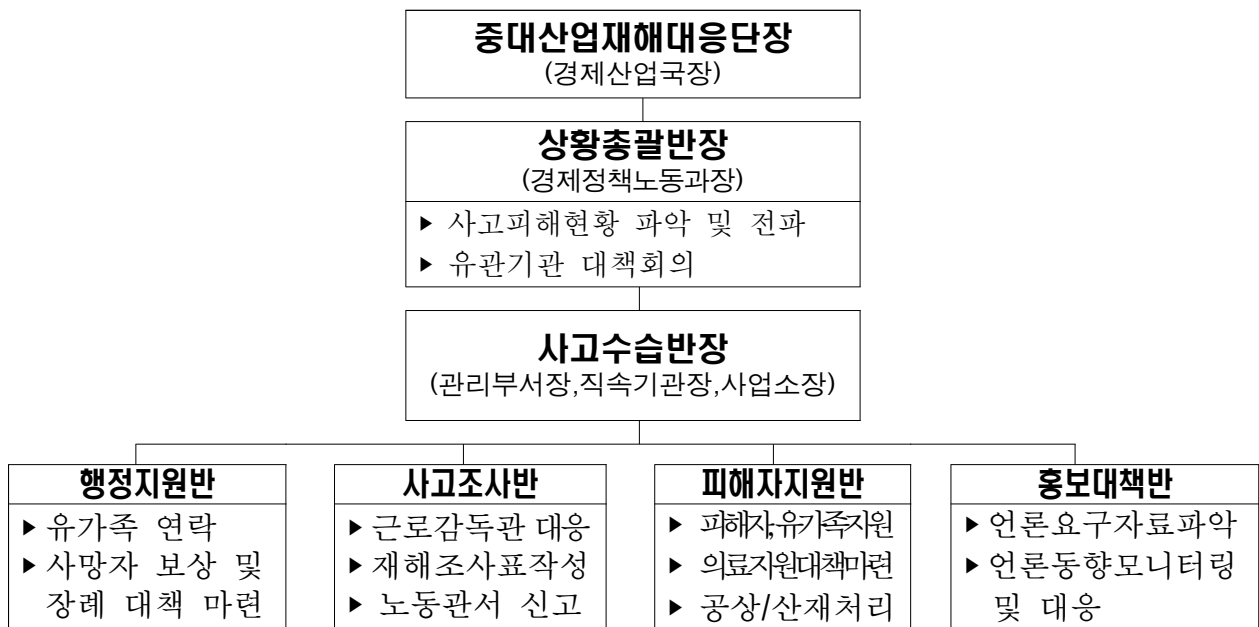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②-5 사업장별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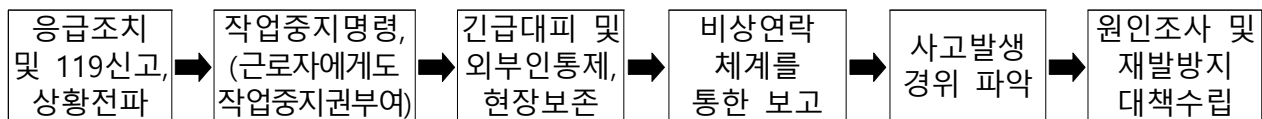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대응책 마련

□ 비상조직(중대산업재해대응단을 통한 신속·총력 대응

- 구성시기 : 종사자 중 사고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 ※ 질병피해의 경우 별도 판단, 중대산업재해가 아닌 안전사고는 사업장별 대응
- 조직구성 및 역할



- 비상조치 절차



□ 재해발생 원인의 조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해당 작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종사자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여 인적, 물적, 관리적 유해·위험요인 발굴

□ 동일·유사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근로환경, 업무절차, 매뉴얼 등 개선, 종사자 교육 및 사례 전파
- 사고후유증(장애, 트라우마), 직업성 질병의 경우 종사자의 건강상태 및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보직 변경 또는 배치근무 추진

2-6 「산업재해 예방 업무매뉴얼」 제작 · 배포

- 제작시기 : '23. 4월 중
- 제작방법 :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법령 해설서 등을 반영하여 제작
 -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가이드라인」, 「중대재해처벌법 중대 산업분야 해설」, 「자치단체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관리상 조치 이행, 위험성평가, 비상 시 조치 방법 및 절차 등을 시각화하여 알기 쉽게 제작
- 활용방안 : 본청 및 사업소, 시군, 산하기관 등에 배포하여 중대산업 재해 대응 및 표준 매뉴얼로 활용
 - ※ 매뉴얼 제작(업데이트)시 까지 기존의 「2022경상북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과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산업재해 예방매뉴얼」 활용



②-7 도급·용역·위탁 등의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

도급, 용역, 위탁계약 시 안전보건 역량이 충분한 업체를 선정하고, 수급업체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 대상사업

- 적용기준 : 도급·용역·위탁 사업

□ 보호대상 :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

□ 주요내용

- (단계별관리) 계약의뢰^{사업부서} → 계약체결^{계약체결부서} → 사업집행^{사업부서}
- (안전보건 기준)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법 제4조·제5조)
 - 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② 안전보건관리비용과 공사기간 확인(건설업)
 - ③ 안전보건관련 규정 이행여부 점검 등
-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안전보건 기준 준수(안전관리능력평가,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의무이행 → 각 사업 관리부서
 - (발주 부서) 부서의 관리감독자 및 업무담당자는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도급(2천만원 미만)·용역·위탁 안전보건 기준 마련 중
 - 건설공사: 「지방자치단체낙찰자결정기준」(행안부예규)개정('22.11.1.)으로 계약상대방 선정 시 안전관리능력을 평가

□ 추진일정

- 도급·용역·위탁 등 안전보건기준강화(안)(붙임7)에 대한 관리부서 검토의견 반영 및 평가기준 안내(수시): 회계과, 소관부서
 -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시('23년 상반기) 신인도 심사항목에 안전보건확보 평가 사항 등을 추가
 - 계약시 수급자에 대한 “안전보건준수서약서” 징구

3

산업재해 관리상황 모니터링 강화

③-1 산업재해 발생 보고절차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를 확실히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

□ 개요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대상 : 전체 종사자(제3의종사자 포함)
- 산업재해 정의

①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②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③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사고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 시 ⇒ 사고 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 사고 즉시 유선보고, 지체 없이 서면보고
- 산업재해조사표(붙임8),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산재)~5년간(중대) 보존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053-667-6360/본청 중대산업재해예방팀)

주 체 구 분	사업장 관리감독자 (부서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실국장,작속기관장,사업소장등 자치행정국장(본청현업근로자))	산업재해 총괄부서 (경제정책노동과)
산업재해	(즉시) 유선 보고 (관리부서→경제정책노동과) (7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 이내) 재발 방지 계획 수립, 근로자 전파 교육	(1개월 이내) ▶ 산업재해조사표제출→고용부 ※ 경제정책노동과(25일내)	(필요시) 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 재발 방지 계획 적정성 검토 ▶ 교육 이행여부 확인 ▶ 산업재해 통계기록 유지
중대산업재해	(즉시) 유선보고 (관리부서 → 경제정책노동과, 고용부) (즉시) 작업중지, 재발 방지 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전파 교육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체 없이) ▶ 산업재해조사표제출→고용부 ※ 경제정책노동과(지체없이)	(전체) 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 재발 방지 계획 적정성 검토 ▶ 교육 이행여부 확인 ▶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③-2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및 조치, 보고

사업장별 자체계획(공공행정 종사자 및 제3의 종사자, 인력·예산·안전점검·유지관리·안전교육 등)에 따른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하여 개선 필요사항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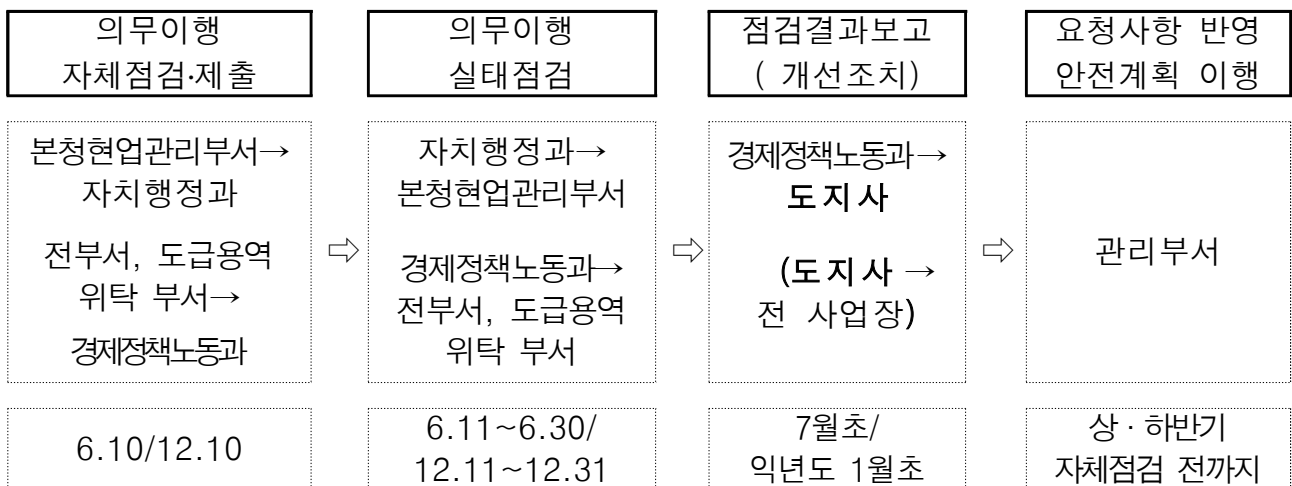
□ 점검 개요

- 점검주체 : 도지사(종사자 및 도급·용역·위탁 등 제3의 종사자 관리부서)
- 점검방법 :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 제출
 - * 자체점검 종류 : 정기점검(일일, 주간, 반기, 연간), 임시점검, 수시점검 등
- 정기점검 일정
 - 상반기(전년12.11. ~ 6. 10.) 점검 실적 매년 6. 10일까지 제출
 - 하반기(6. 11. ~ 12.10.) 점검 실적 매년 12. 10까지 제출
- 점검내용 : 자체계획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개선, 안전보건 장비 구비, 교육 등

사업장 안전보건 (경제정책노동과, 자치행정과, 각 부서)
<점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 사업장 위해·위험 요인 제거 ▶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반영 ▶ 법정 안전보건교육 이수 ▶ 안전보건 관련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도급·용역·위탁 점검 (관리부서)
<점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위해·위험 요인 제거 ▶ 현장 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운용 ▶ 현장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안전보건관리 규정준수 및 기록 ▶ 현장 안전관리자 등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이행점검 절차



③-3 교육 참여를 통한 종사자 안전의식 고취(인사과, 인재개발원)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법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직원 역량강화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전문기관 교육

-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중대재해예방 신규과정 운영(35명 정원, 3월/11월 운영)
- 과정명 : 중대재해와 산업안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에 필요한 필요 사항
- 교육방법 : 선임 또는 채용 3개월 이내 신규교육, 매 2년 보수교육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집합교육 원칙, 1/3e러닝+2/3 집합교육 가능)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공무직, 기간제 중 현업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현업종사자의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외 근로자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종사자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 예방, 작업환경관리, 산업재해 예방·대응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실시
- ※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교육 등 부서 자체교육(교육일지 작성 및 전자문서 등록)

1 | 향후계획

- 2023 경상북도 중대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자체계획 수립지침) 배포
 - 실국, 사업소별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종사자 안전보건관리 현황 포함
-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수시 점검
- 안전보건 실무교육(실과소 중대산재 및 위험성 평가 담당자 대상) : '23. 3월
- 道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붙임9)(道산재예방 및 노동안전지원조례):'23. 4월
-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등 상반기 자체위험성 평가 실시 : '23. 5~6.10일
- 중대산업재해 위험성평가 및 의무이행 상반기 점검 및 보고 : '23. 7월
-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등 하반기 자체위험성 평가 실시 : '23. 11~12.10일
- 중대산업재해 위험성평가 및 의무이행 하반기 점검 및 보고 : '24. 1월
- 산업재해 경감을 위한 부서 **협조체계 구축**
 -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단속·지도 강화(환경정책과)
 - 사업소, 대형(도급)공사장 등 산업안전보건 이행실태 점검 강화(감사관)
 - 안전보건에 관한 부서평가 기준마련 및 이행('24년 시행, 경제정책 노동과, 정책기획관)
 - 청사 방호·보안 강화를 통한 안전 사고예방(자치행정과, 각 기관)
 - 출자출연기관 정기 감사시 안전보건이행실태 점검·지도(감사관 예산담당관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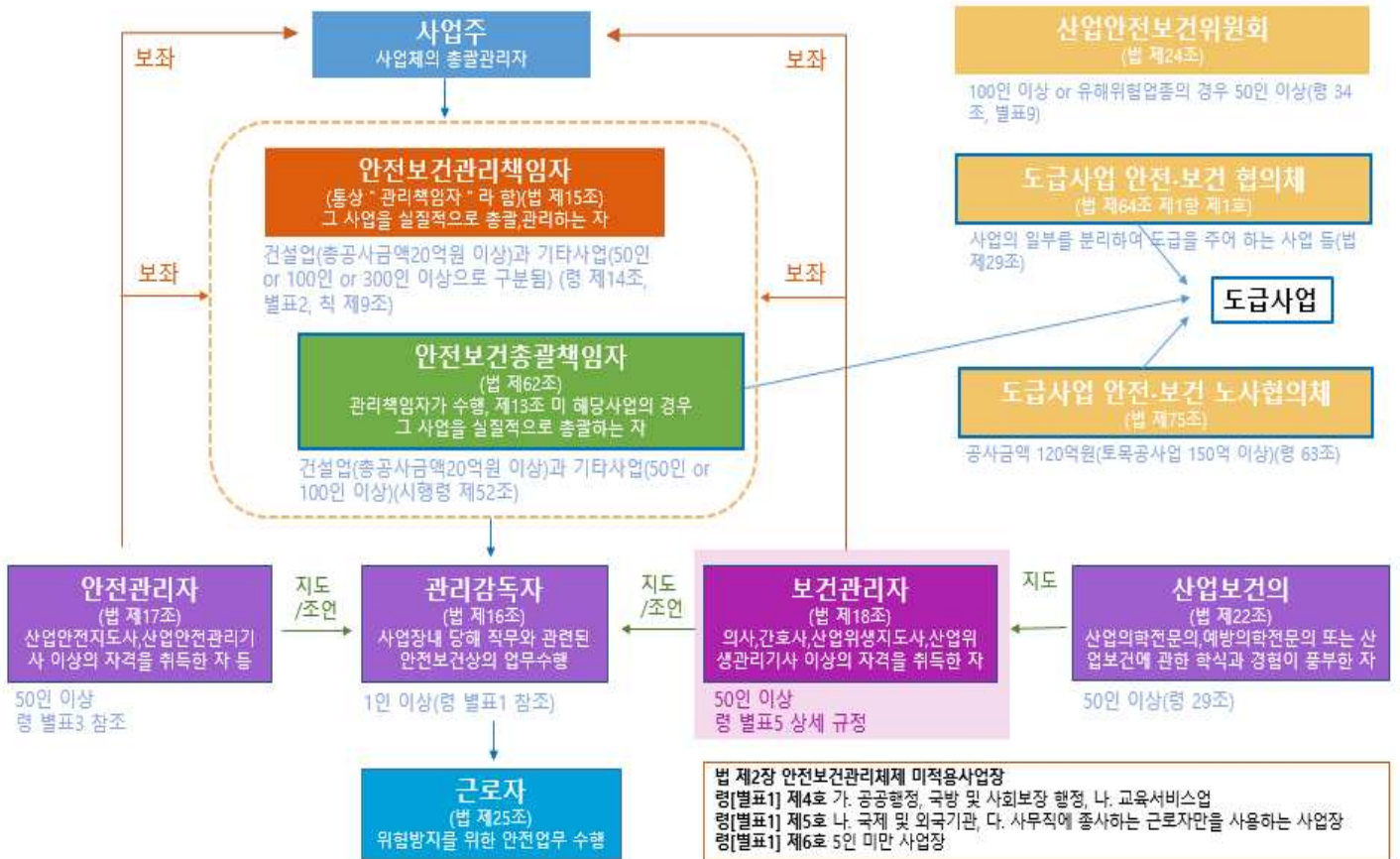
2 |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료(붙임)

1. 경상북도 안전보건체계 구축 적용 대상 사업장 24
2. 경상북도 안전보건관리체계 25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6
4. 사업장별 도급인 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안내 .. 27
5.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 가이드 34
6. 위험성 평가 절차도 및 사례 37
7. 도급·용역·위탁 등 안전보건기준 강화 39
- 7-1. 시행중인(예정인) 도급·용역·위탁사업 내역(서식) ... 43
8. 중대재해 상황보고서 및 산업재해조사표(서식) 44
9. 경상북도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성(안) 51
10. 유관기관, 시군 협력체계 구축 및 산업재해 경감 계획 .. 52
11. 사업장별 이행사항 점검 가이드 54
12.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61
13. 안전보건 의무이행과 관련법령 62
14.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63

적용기준	근거	의무사항	해당 사업장 수 ■ 직속기관 ■ 지역본부 ■ 사업소
<p>현업업무 종사자 100명 ~ 300명 미만</p>	<p>산업 안전 보건법</p>	<p>안전·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배치 (분청 위탁시행 중)</p> <p>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p> <p>안전보건관리규정</p> <p>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 교육(추가교육제외) 위험성 평가 실시(모든사업장)</p>	<p>2개소</p> <p>분청(의회사무처, 자치경찰위원회 포함) 농업기술원(성주,청도,영양,상주,봉화,구미,풍기연구소 포함)</p>
<p>현업업무 종사자 5명~100명 미만</p>	<p>산업 안전 보건법</p>	<p>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 교육(추가교육제외) 위험성 평가 실시(모든사업장)</p>	<p>29개소</p> <p>■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 소방본부(소방학교, 특수대응단, 소방서), 경북도립대학교, ■ 환동해지역본부, 어업기술원, 어업기술원(북부지원), 어업기술원(울릉독도지원), 수산자원연구원, 수산자원연구원(민물고기연구센터), 수산자원연구원(토속어류산업화센터), ■ 농업자원관리원, 농업자원관리원(의성분원), 농업자원관리원(잠사곤충사업장),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 동물위생시험소(동부지소), 동물위생시험소(서부지소), 축산기술연구소 산림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북부지원), 산림환경연구원(서부지원), 사방기술교육센터, 북부건설사업소, 남부건설사업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산림자원개발원, 산림자원개발원(수목원관리소)</p>
<p>현업업무 종사자 5명 미만</p>	<p>산업 안전 보건법</p>	<p>안전보건 교육(추가교육제외) 위험성 평가 실시(모든사업장)</p>	<p>2개소</p> <p>경북도서관, 서울본부</p>

□ 안전보건관리체계

- 「산업안전보건법」 및 경상북도 안전보건관리규정 (‘19.12.18제정) 준수
- 현업업무종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장 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

- 공공기관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가 100명 이상 시 선임의무 발생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제17조, 제18조)

- 현업종사자 50명 이상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등 선임의무 발생

□ 관리감독자(제16조) 공공행정 현업업무종사자 1명 이상 시 선임의무 발생

- 46개 실과소, 452명

□ 위험성평가

- 현업에 관계없이 종사자 근무하는 사업장 상·하반기 위험성평가 실시

□ 개 요

- 구 성 : 노사동수 각 6인 이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2019. 12월)
 - 근로자위원 : 근로자의 과반수 대표자, 대표자가 지명하는 근로자
 - 사용자위원 :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서의 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 대 상(100명 이상 현업근로자 사업장) : 본청, 농업기술원
- 회의방법
 - 회의시기 : 정기회의(매 분기 1회), 임시회의(필요 시)
 - 개의·의결 : 노사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주요 심의·의결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사후조치 : 회의록 작성, 회의 결과 등 근로자에게 신속히 공지

※ 농업기술원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 미 준수 사항

- 관 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내지 제25조, 동법시행령 제34조
- 위반사항 : 공공행정 상시근로자(현업) 100명 이상 산업안전관리 규정 미수립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운영)

□ 큰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내지 제82조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관계수급인” 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산안법 제2조 정의)

□ “도급” 의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상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상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과 동일)

※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상 “도급·용역·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 과 「건설산업기본법상」 의 “도급”을 의미함(중대재해처벌법 별칙해설: 대검찰청)

□ 주요내용

- 합동 안전·보건점검(주기 분기 1회, 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별도 이행)
 - 점검반구성 : 도급인, 수급인, 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 (도급인)-수탁업체(수급인)간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구 성	회의주기	회의 내용	기 타
도급인 + 수급인	월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 공정의 조정 	회의결과 기록·보존

○ 기타 이행 사항

- 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장소·자료 요청 시 지원 및 실시 확인
- 발파, 화재, 붕괴, 지진 등 대비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 훈련
- 휴게·세면시설 등 위생시설 이용 협조

○ 각 주요내용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사항**(운영실적 제출 : 반기 1회)

- 사업장별 자체적으로 주요내용 이행
- 주요내용 이행에 관한 사항 문서 작성 및 보존 : 이행시 마다

■ 산업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

※ 매월 1회 점검 必

회의일시 및 장소 :

참석자 : 도급인 경상북도 ○○○○과 ○○○

: 수급인 1. ○○○○(주) 대표자(또는 대리인) ○○○

: 수급인 2. ○○○○(주) 대표자(또는 대리인) ○○○

회의내용

연 번	안 건	회의결과
1	· 작업 시작 · 시간	
2	· 작업(장) 간 연락방법	
3	· 재해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4	· 위험성평가의 실시	
5	· 도/수급인, 수급인 상호간 연락방법	
6	· 도/수급인, 수급인 상호간 작업공정 조정	
7	· 기 타	

▪ **산업안전보건 도급인-수급인 합동 안전보건 점검 대장** ▪

※ 분기 1회 점검 必

점검일시 :

점 검 반

도 급 인		수 급 인 1		수 급 인 2	
대표자 또는 대리인	감독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	종사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	종사자

점검내용

연 번	점검장소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사항
1			
2			
3			
4			
5			
6			
7			

■ 작업장 순회점검 대장 ■

※ 주 1회 점검 必

점검일시 :

점 검 반

점검내용

연 번	점검장소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사항
1			
2			
3			
4			
5			
6			
7			

▪ 지진 등 대비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훈련 일지 ▪

※ 수시 시행

점검일시 :

점 검 반 :

점검내용

연 번	제 목	내 용
1		
2		
3		
4		
5		
6		
7		

훈련 참석자

연 번	성 명	소 속	서 명
1			
2			
3			
4			
5			
6			
7			

■ 요청사항 및 협조사항 관리대장 ■

※ 요청사항 접수시 작성

작성자 : 0000과 000

연 번	요 청 일	요청사항	협조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항 목	확 인 내 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목표 ❖ 관리감독책임자(부서의 장, 소장) 리더십, 의지 및 안전보건방침 ❖ 현장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 ❖ 안전보건 관련 대장 작성 ❖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 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계획 ❖ 하도급 관리계획
계획의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교육 및 적격성 ❖ 자체 안전보건관리 활동
진행 공정 안전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공정표 및 공정현황 ❖ 공정별 위험성 확인(붙임11 참조) ❖ 도출된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 발주공사 K2B시스템 입력
평가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상황 현장 자체점검 ❖ 시정조치 및 개선여부 확인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서

1. 사업장 개요

관리(산재)번호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작업내용			
발생일시	년 월 일 시경		재해발생지역(부서)	
인적피해	사망()명, 부상()명		방호설비	<input type="checkbox"/> 대상(설비:)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물적피해	천원	조업정지일	개인보호장비	<input type="checkbox"/> 대상(장비:)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작업형태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복수()명		기인물(재해원인물체 · 물질)	
발생형태	재해유발 공정 및 내용			

2. 재해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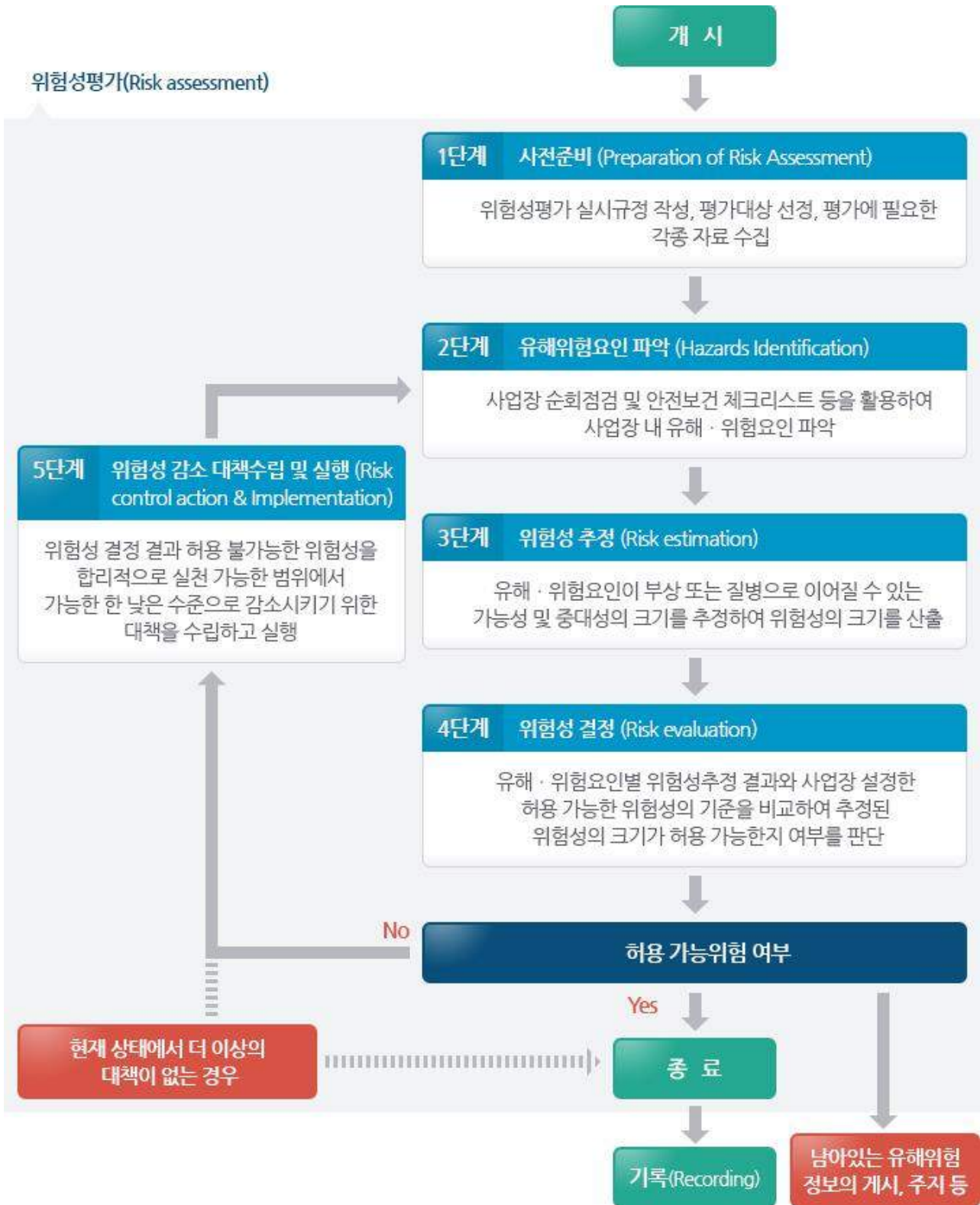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동일재해로 재해자수가 다수 발생된 경우 별도 서식에 추가 기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동종업무근속기간	
고용형태	<input type="checkbox"/> 상용 <input type="checkbox"/> 임시 <input type="checkbox"/> 일용 <input type="checkbox"/> 시간제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발생지점	<input type="checkbox"/> 정규작업 <input type="checkbox"/> 식사 · 휴식 <input type="checkbox"/> 작업전 <input type="checkbox"/> 출퇴근 <input type="checkbox"/> 휴일근무 <input type="checkbox"/> 시간외근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근무형태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2교대 <input type="checkbox"/> 3교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근로 손실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부상 <input type="checkbox"/> 재해당일 계속작업 <input type="checkbox"/> 재해당일 작업불가	
직업 (직위)	상해종류 (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출근을 하지 못한 일수 : 일 작업 제한을 받은 일수 : 일	
평상시 수행 작업공정, 내용				
재해당시 수행 작업공정, 내용				

3. 재해발생 과정 및 원인

재 해 발 생 과 정 및 원 인	<p>재해관련 취급설비, 작업공정의 운전 또는 상황과 당시 작업자(또는 재해자)의 행동 및 사고 발생과정 등을 기록함.</p> <p>- 육하원칙(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하여 작성함.</p>
	1) 재해발생과정
	2) 재해발생 원인

4. 재해 재발방지 대책



붙임 6-1

위험성 평가 사례

기 관 (부서명)		평가자	관리감독자:	확인자	소장 :			
평가일시	2022. 11.26		현장근로자:		담당 :			
작업내용	평가구분	유 해 위 험 요 인 파	현 재 안 전 조 치 약 (현 재 상 태)	현재 위험성			위 험	
				빈도	강도	위험성	허용여부	
		락스 등 사용에 따른 호흡기 등 위험	- 안전직업교육 실시 - 마스크 착용	소	중	고위험	허용 불가	
		사다리작업에 따른 낙상 위험	- 안전직업교육 실시 - 안전모 착용	소	소	위험	허용 가능	
		벌집, 거미줄 제거시 낙상 위험	- 안전직업교육 실시 - 안전모 착용	소	소	위험	허용 가능	
		화분, 생수통, 박스 이동시 부상 위험	- 안전직업교육 실시	소	소	위험	허용 가능	
		의자넘어짐, 자동문 끼임에 따른 부상 위험	- 안전직업교육 실시	소	소	위험	허용 가능	
		전산장비, 모니터 장시간 모니터링 후 전자파 등에 따른 눈 피로 등 위험	- 안전직업교육 실시	소	소	위험	허용 가능	
		수신기 등 장비보수 돌출에 따른 부딪힘 부상	- 안전직업교육 실시	소	소	위험	허용 가능	
		서류작성 등에 따른 종이베임 등 부상	- 안전직업교육 실시	소	소	위험	허용 가능	
		청소작업 후 물기 등에 따른 미끄러짐 낙상 위험	- 안전직업교육 실시	소	소	위험	허용 가능	

※ 위험성은 새로운 고용노동부기준(23)에 의하여 위험성 빈도 및 강도 3단계(대-중-소), 위험성 평가 4단계(초위험-고위험-위험-저위험)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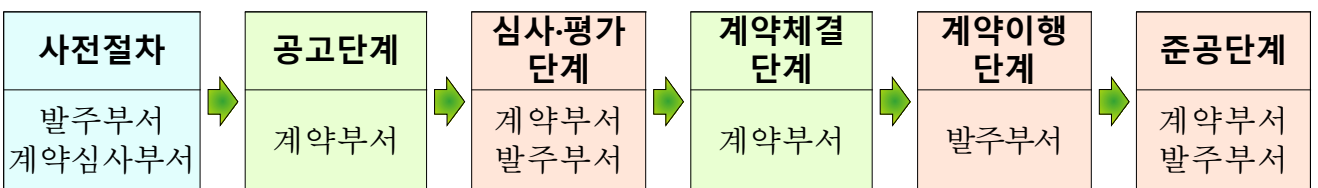
도급·용역 관리

□ 도급·용역 시의 평가기준과 절차마련(경제정책노동과, 회계과)

- 공사·용역 계약의 발주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단계별로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기준 마련
 - 입찰 공고시부터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후 계약체결
 - 입찰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의 평가를 통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부실업체 감점을 부여하기 위한 심사·평가 기준 마련
 -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취지에 맞도록 지방계약법상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강화
- 계약체결 이후 분야별·시설별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재해예방 관련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계약단계별 세부 추진내용

< 계약단계별 운영절차 >



1] (사전절차)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발주부서, 계약심사부서, 원가심사팀)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 공사종류별(일반건설공사/중간건설공사/기타건설공사) 사업금액별 적용비율(1.2%~3.43%) 준수
- (용역)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발주하도록 안내
 - ▶ 용역의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안전점검비용, 보수보강 등 비용 포함
- 원가심사 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 여부 확인

② (공고단계) 입찰 시 공고문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계약부서)

- 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낙찰률 적용 없이 반영한다는 사항을 공고문에 명시하고, 공사초기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공고

③ (심사단계) 계약업체 선정 시 입찰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① 적격심사 대상자 평가

[계약부서]

- 현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산업재해 발생 및 산업안전관리법규 위반 시 신인도평가에서 감점 처리규정 시행중
- 공사 및 용역의 적격심사기준에 업체의 안전보건확보 정도에 따라 평가·선정이 가능 하도록 안전보건관리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반영한 적격심사 기준이 요구되고 있으나 부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소규모 도급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마련

[계약부서/발주부서]

○ 현 행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건설공사는 사업비 구간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 반영(총사업비의 1.2%~3.4%)

- (전기공사) 2023년도부터 정보통신공사업 표준품셈 시행 :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문제점

- 소규모 건설공사(2천만원 미만-수의계약 대상), 용역, 위탁사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비 기준 부재

▶ 안전보건관리비: 도급 등의 공사시 안전보건 이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에 대한 비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사업주(경영책임자)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 필요시점: 계약심사부서에서 원가심사 및 발주부서 사업수행 관리감독 시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 정량평가 항목에 안전 및 보건확보 분야를 포함하도록 발주부서 안내

※ 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위한 정량평가기준 예시 마련·배포

④ (계약체결단계) 계약서 상에 업체 의무사항 포함하여 계약체결(계약부서)

-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약속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계약부속 서식에 추가

※ 現 2종의 서약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이행서약서) 외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추가

- 계약업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처법 제4조 및 제9조) 명기

⑤ (계약이행단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 철저(발주부서, 감사관)

- 계약상대자의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교육 이수여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등 확인·점검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총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공사 계획 단계 시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산재예방 조치

⑥ (준공단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발주부서)

- 준공검수시 입찰공고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용실사용 금액 확인·정산-도급·용역·위탁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발주부서)

- 발주자 의무 이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계상,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안전보건대장 작성(총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공사) 등

- 도급인 의무 이행 : 안전보건협의체운영(월1회), 작업장합동안전 보건점검(분기1회), 순회점검(주 1회), 위험성 평가(연 2회) 등

< 지자체 수행/발주공사 안전관리(정부합동평가) >

- ❖ 점검대상 : 지방재정365 계약(공사, 용역) 기준
- ❖ 점검내용 : 수행 발주공사의 안전점검 이행률(이행건수/대상건수) K2B 입력
 - 공사기간 6개월 미만(1회 이상), 6개월 이상(2회 이상) 점검 실시 등

위탁사무 관리 (발주부서)

- 중대재해와 관련한 道(도)의 책임은 '위탁자'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 "민간위탁"은 道(도)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조례 제2조 제1호)
- 도(사업부서)는 위탁사무의 지도감독권을 행사, 기관별 준비현황 및 이행상황 점검
- 수탁기관 선정 시 안전·보건 조치능력 및 기술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수탁기관 모집공고 시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명시, 선정시 평가
 - 협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이행이 필요함을 명시
- 수탁기관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시행
 - 수탁기관에 대한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체크리스트에 이행실태 항목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관련 제도 정비(안)>

- ❖ 표준협약서 개정 : '중대산업재해관련' 수탁기관의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의무 명시
- ❖ 지도·점검 횟수 상향 : 연 2회 이상(기존 연 1회→ 연 2회(반기1회 이상))
-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보완 :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실행여부 추가

(사업장명)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대응상황 보고**■ 개요**

- 일시/장소 :
- 발생원인 :

■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 , 실종 : , 부상 :)
※ 피해자 인적사항 별첨
- 재산피해 :
- 기 타 :

■ 긴급구조 및 수습상황

- 조치내역 :
- 동원상황 :
 - 인력 :
 - 장비 :

■ 지원·협조 요청사항(타 부서 및 기관 등)

- 예산, 인력, 장비 등

■ 향후 전망 및 대책(구조, 구호, 복구, 피해자 지원 등)

-

경상북도 중대산업재해 사고수습반 조사보고
〈0000사업장 0000사고 관련사항〉

2023. . .

경상북도 중대재해 사고수습반

경상북도 중대산업재해 사고수습반 조사보고서

<0000사업장 0000사고 관련사항>

□ 경상북도 중대산업재해 사고수습반 조사보고
<0000사업장 0000사고 관련사항>

■ 사고 개요

- 일 시 : '00.00.00(월) 00:00경
- 장 소 : 00시 00구 000동
- 인명피해 : 00명 사망, 00명 부상
 - 000(00세) 00병원 후송 중, 000(00세) 사망

사고 위치도

※ 사고위치도 첨부

작성자

000실국장 000-000-0000, 000과장 000-000-0000

■ 사고 내용

- 사고현장 상황, 내용 작성
- 누가?
- 언제?
- 어떠한 장소에서?

사고 현장	
※ 사고 현장 사진 첨부 <000000>	※ 사고 현장 사진 첨부 <000000>

■ 사고 발생 및 조치 경위

- '00.00.00(월), 00:00 사고발생
- '00.00.00(월), 00:00 119신고
- '00.00.00(월), 00:00 사고자 수색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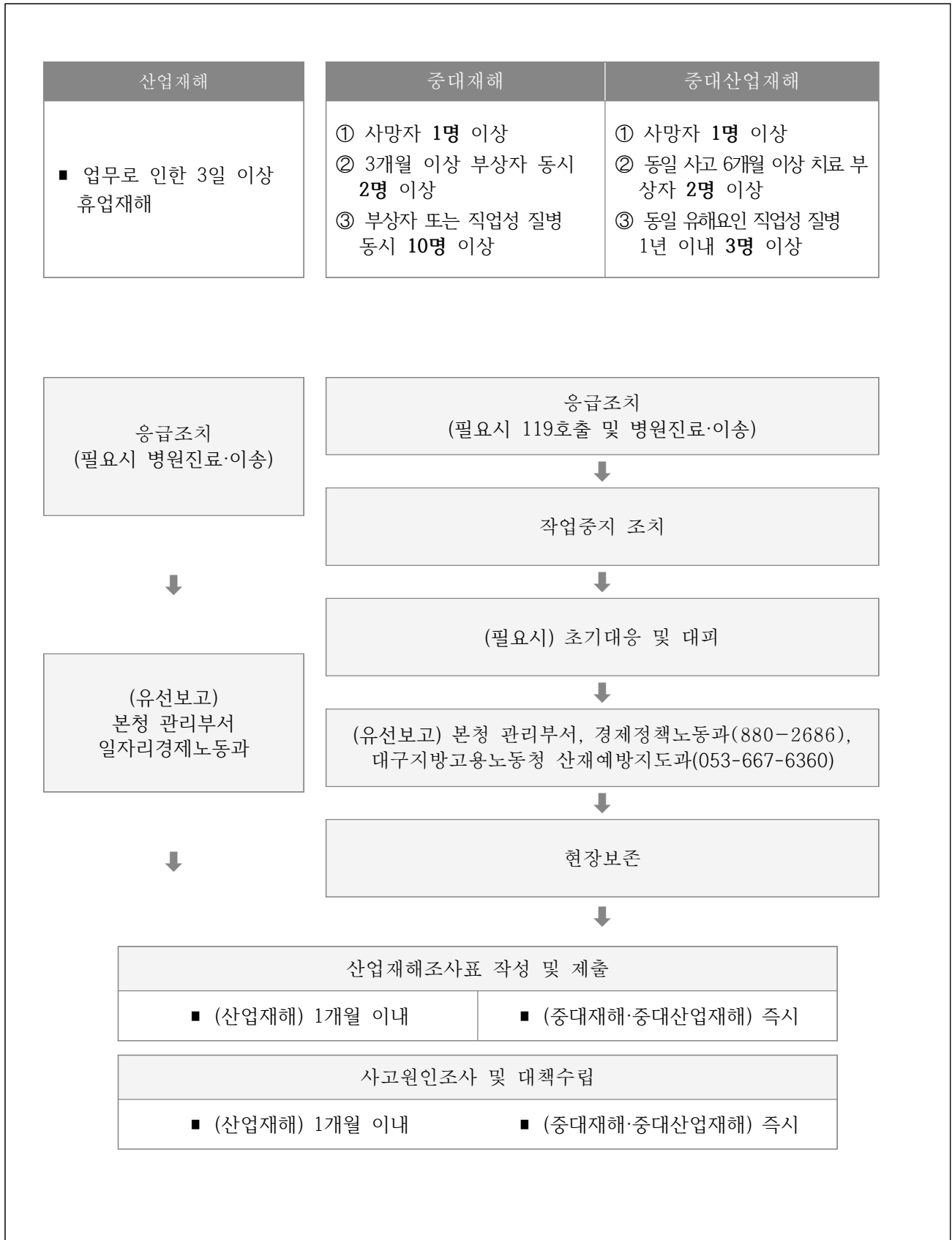
■ 후속조치 사항

-
-

■ 향후계획

-
-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도



□ 개 요

- 목 적 :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활용, 道(도)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심의·자문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의 내실화 도모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구성 및 운영 계획

- 구 성 : 위원 12명 정도
 - (위촉직) 도의원 1, 관련 분야 전문가 2,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추천인 각 2,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추천인 3
 - (당연직) 경제산업국장, 자치행정국장(간사: 경제정책노동과장)
- 운 영
 - (위원장)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위원 중 호선)
 - (임 기) 2년(1회 연임 가능)
 - (회 의) 정기회의(반기별), 임시회의(필요시)
 -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기 능 : 지역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점검·평가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기반 조성 과 제도 개선 등

□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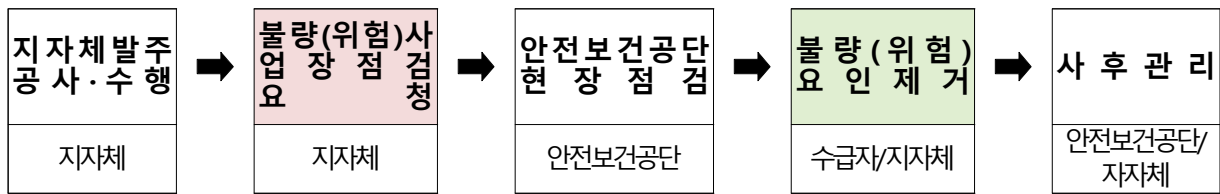
- ' 23. 1~3월 : 위원회 구성
- ' 23. 4~11월 : 상·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유 관 기 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행, 국비보조 공모사업 확대

- 산업재해예방 4개 분야 ('23년도 총 22억원 규모)

■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의 전문적 안전보건점검 필요사업장 현장패트롤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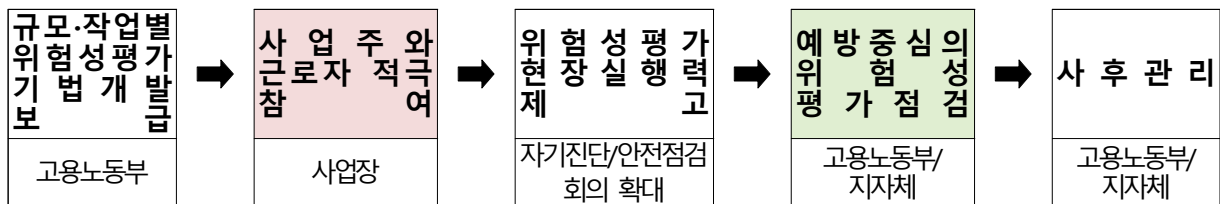
■ 중소기업 고위험 사업장 합동점검 시행(道·시군·지방고용노동관서)

- 전년도 중대산업재해 발생현장 합동 점검
- 위험성 개선 및 이행사항 확인
- 중대산업재해 발생 유사 사업장 정보공유 및 현장 확인

■ 주기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 시행

- 고위험 사업장 밀집지역의 교통요충지 위주(시군 순회)

■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을 위한 기술지원 및 기관 간 협조



■ 지역안전보건협의체(道-지방고용노동청-안전보건공단) 운영 활성화

- 상반기-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 • 하반기-경상북도 주관
- 수 시 : 중대산업재해 다수 발생 또는 산업재해관련 주요정책 변경 시

시 군

시·군 지도점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견고히 하고, 특히 도급(용역, 위탁)사업에 있어서 수급자는 시군과 道(도)의 공동수급자가 될 수 있는 측면을 감안,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전에 재해 예방에 기여함은 물론 도 전체 산업재해 발생을 경감시키고자 함

■ 시·군 조례제정을 통한 산업재해예방 기반구축

- (현재) 6개 시·군 조례제정 → (연말) 17개 시·군으로 확대(77%)

■ 시·군 대형(도급)공사장에 대한 감사 시 산업안전보건 감사 실시(道 감사관)

■ 시·군 종합감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의무이행 점검 (감사항목 신설)

■ 시·군 중대재해 예방 부서와의 주기적인 회의(산재예방협의회) 개최를 통한 산업안전 정보공유 및 산업재해 경감 대책 강구

■ 시·군 산업재해예방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강화

■ ‘道(도)안전보건 지킴이’ 활용 사업현장 안전점검 확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행, 국비보조 공모사업 참여 및 사업체 신청 홍보

■ 시·군 순회 주기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 시행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道(도), 시·군 합동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숙지하고, 자율진단표에 따라 자율진단을 실시한 후, 아래 이메일 또는 팩스로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지방고용노동(지)청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이메일: △△△@korea.kr

1. 일반 현황

사업장명		업 종	(대분류)
설 립 일	. . .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대 표 자		소 재 지	
담 당 자	직책:	성명:	연락처:
	이메일:	@	팩스:
상시근로자수	000명(자율진단표 제출일 기준)		
협력업체 현황	사내 협력업체: 개소	사외 협력업체(개소)	
산재현황	3년간 사고성재해 현황:	명	3년간 사고사망사고 현황: 명
	1년간 사고성재해 현황:	명	1년간 사고사망사고 현황: 명

2.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위험요인 보유 현황

다음 항목별 해당하는 사항에 모두 체크(☑) 및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 반	【안전보건 경영방침】 <input type="checkbox"/> 수립 <input type="checkbox"/> 미수립 <input type="checkbox"/> 모름			
	【안전보건 전문인력】 <input type="checkbox"/> 구성·운영 <input type="checkbox"/> 미구성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자 (명)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전문기관(기관명:)			
	<input type="checkbox"/> 보건관리자 (명) <input type="checkbox"/> 보건관리전문기관(기관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input type="checkbox"/> 구성·운영 <input type="checkbox"/> 미구성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안전보건관리규정】 <input type="checkbox"/> 작성 <input type="checkbox"/> 미작성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input type="checkbox"/> 위촉 <input type="checkbox"/> 미위촉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위험요인 리스트】 <input type="checkbox"/> 작성·관리 <input type="checkbox"/> 작성 후 미관리 <input type="checkbox"/> 미작성				
작업 환경 관리	화재· 폭발	【작업환경측정】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대상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모름		
		【인화성·가연성 물질】 <input type="checkbox"/> 사용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input type="checkbox"/> 모름		
		【화기작업 작업허가제】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모름		
	위험 기계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 보유 여부】 * 가이드북 45~50p 참고		
		<input type="checkbox"/> 보유 <input type="checkbox"/> 미보유 <input type="checkbox"/> 모름		
		【각 위험기계의 안전인증】 <input type="checkbox"/> 인증 <input type="checkbox"/> 미인증 <input type="checkbox"/> 모름/해당 없음		
		【각 위험기계의 안전검사】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모름/해당 없음		
	【각 위험기계 방호조치】 <input type="checkbox"/> 조치/관리 <input type="checkbox"/> 미관리 <input type="checkbox"/> 모름			
	추락 위험	【추락 위험장소】 <input type="checkbox"/> 관리 <input type="checkbox"/> 미관리 <input type="checkbox"/> 없음		
		【추락 위험작업 관리】 <input type="checkbox"/> 관리 <input type="checkbox"/> 미관리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모름		
질식 위험	【밀폐공간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모름			
	【밀폐공간 작업허가제】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모름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율진단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현재 사업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2. 공장장, 부서장 등 주요 관리자는 안전보건 업무가 본인의 업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3. 근로자들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4.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작업절차와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정한 규정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5.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한다.			
6. 사업장 내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화학물질, 위험장소 등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한다.			
7.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1개 이상 작성한다.			
8. 도급·용역·위탁 업체 선정 시,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절차가 있다.			
9. 주기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위험 기계·기구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기계·기구를 구매하는 경우 안전성(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신고 등)이 확보된 제품인지 항상 확인한다.			
2.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표준작업절차를 가지고 있다.			
3. 주기적으로 표준작업절차를 교육하고 있다.			
4. 근로자가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작업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한다.			
5. 모든 위험 기계·기구에 덮개 등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6. 설치되어 있는 방호장치를 관리자의 승인 없이 해체할 수 없으며, 해체할 경우 별도의 절차를 가지고 있다.			
7. 방호장치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기계·기구 작업자에게 이를 교육하며, 관련 절차를 두고 있다.			
8. 기계 및 장비가 넘어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9. 작업자의 작업 위치에서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비상정지장치나 동력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10. 풋 스위치가 작동자의 실수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작동되지 않도록 안전 가드 등이 설치되어 있다.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1. 기계 및 장비 작동을 제어하는 스위치를 쉽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12.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연간 점검·정비·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예방점검 및 정비·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13. 정비이력카드 등을 작성·관리 등을 통해 점검·정비 실적을 확인하고 있다.			
14. 기계 및 장비의 유지·보수 작업자에게 제조공정과 위험성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5. 기계 및 장비의 중요도와 위험성에 따라 점검·검사 주기를 달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16. 정비, 조정, 설정 등 유지·보수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17. 비정형작업 시 해당 작업 근로자 외 안전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다.			
18. 안전한 작동, 설치, 정비, 자재 취급 등을 위한 안전 거리가 확보되어 있다.			
19. 기계 및 장비별 검사결과 등 검사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20. 설계사양 및 제작자 지침에 따라 기계 및 장비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 유해인자 보유 시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2.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경보설비, 긴급 차단장치 등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설치된 설비의 적정 작동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3.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이를 고려하여 업무에 배치한다.			
4. 화학물질 도입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5. 화재·폭발 위험장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6. 화재·폭발·누출 시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7. 소음·진동·방사선·기압·기온 등 물리적 인자가 적정 수준인지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8. 근로자가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치 등을 실시한다.			
9. 사업장내 밀폐공간의 위치,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작업 절차 등을 관리하고 있다.			
10.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요인 조사를 하고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 위험 기계·기구

이행실태 점검항목	세부 실태 점검내용
<p>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사항</p>	<p>○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 계약여부 - 대상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토 목공사 150억원)미만의 공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공사</p>
<p>추락사고 예방관리</p>	<p>○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및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추락위험장소에 작업발판이 설치된 비계사용 - 경사로의 폭은 90센티미터 이상 설치여부 - 경사로지지 기둥은 3미터 이내마다 설치여부 - 발판은 폭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은 3센티미터 이내로 설치여부 - 이동식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길이 6미터 초과여부 등</p>
<p>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작업 안전관리</p>	<p>○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교육 실시 - 근로자들이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안전교육 ○ 작업 현장 지도점검 강화 - 운행차량에 발판 및 적재함(대형폐기물,재활용품)에 탑승여부 - 환경미화원의 보호장구 사용여부 및 안전장치 적정설치 여부 ○ 수거운반 압축차량 적정 인력탑승 -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수 있도록 3인1조구성</p>
<p>산림 녹지 정비작업 안전관리</p>	<p>○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법 -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여부 -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장구 착용여부 - 작업자 상호간 안전거리 준수여부 - 벌목작업 시 위험반경 내 다른 작업자 확인 및 신호준수 - 벌목 작업 시 작업절차 이행 - 기계톱, 예초기 사용 시 올바른 사용방법 숙지 여부</p>
<p>상하수관로 작업안전관리</p>	<p>○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 확인보수/작업 시 환기장치 설치 등 가동여부 - 밀폐공간에서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표지 게시여부 - 굴착면의 기울기 및 높이의 기준 준수 여부 등 - 보호구 착용여부</p>

구분	조문	제목	주요내용
총칙	제2조	정의	<p>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산업재해: 사망자1명이상,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내 3명이상 발생한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 1명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해예방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 경영체계 수립·이행 ②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③ 정부 등의 개선, 시정명령에 관한 조치 ④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중대산업재해 관련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의무(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제6조	중대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제4조 및 제5조 위반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산업재해(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중대산업재해(부상·질병)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벌 확정 후 5년 내 재범 시 50%까지 가중)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벌 외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산업재해(사망): 50억원 이하의 벌금 - 중대산업재해(부상·질병):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교육 수강의무 -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해예방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 경영체계 수립·이행 ② 안전·보건 조치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③ 정부 등의 개선, 시정명령에 관한 조치 ④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중대시민재해 관련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도급·용역·위탁 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제10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제9조위반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시민재해(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중대시민재해(부상·질병)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11조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벌외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시민재해(사망): 50억원 이하의 벌금 - 중대시민재해(부상·질병): 10억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의 손해배상의 책임 :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 의무 발생

항 목	내 용/역 할	법 령
산 업 재 해 예 방 계 획 수 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산안법 제15조1
안 전 보 건 관 리 책 임 자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관 리 감 독 자 지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 공공행정부문: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안 전 관 리 자 선 임 또는 위 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7조 시행령 제16~19조
보 건 관 리 자 선 임 또는 위 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8조 시행령 제20~23조
산 업 보 건 의 선 임/위 촉/위 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시 1명선임, 위촉시 상시근로자 2,000명당 1명 위촉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법 제22조, 시행령 제29~31조
산 업 안 전 보 건 위 원 회 구 성 · 운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4조, 시행령 제34~39조
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조직, 교육,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등
안 전 보 건 교 육 실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사업장(사무직 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안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위 험 성 평 가 실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사업장(반기 1회 이상 실시) 	법 제36조
안 전 보 건 전 담 조 직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전문인력 배치 3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2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
-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 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2장제1절·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 고용부 고시 제2020-62호 [별표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3.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